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심의 회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3-003-013호

안 건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㈜ (

대표자 윤종일

의결연월일 2023. 2. 22.

주 문

- 1. 피심인 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.
 - 가. 피심인은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 - 나. 피심인은 가.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
이 유

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 (2020. 8. 5. 시행, 법률 제16930호, 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.)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| 피심인명 | 사업자등록번호 | 대표자 성명 | 주소 | 종업원 수 (명)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|
| | | | | |

Ⅱ. 사실조사 결과

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2. 행위 사실

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

서비스를 운영하며

기준으로 아래

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| 구분 | 항목 | 수집일 | 건수(건) |
|----|---------|-----|-------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합 계 | | |
| | | | |

3. 개인정보의 취급.운영 관련 사실관계

가.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

계약이 종료된

의 개인정보(

) 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.

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 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Ⅲ. 위법성 판단

1. 관련법 규정

가.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보호법 제26조는 "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하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2. 위법성 판단

가.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

[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]

피심인이 와 계약이 종료한 의 개인정보()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은 보호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| 위반행위 | 법률 | 세부내용(고시 등) |
|------|----|------------|
| | | |
| | | |

Ⅳ. 처분 및 결정

1. 시정조치 명령

- 가. 피심인은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나. 피심인은 가.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,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

출하여야 한다.

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(시정조치 등)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대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2023년 2월 22일

위원장 고학수 (서명)

부위원장 최 장 혁 (서 명)

위 원 강정화 (서명)

위 원 고성학 (서명)

위 원 백대용 (서명)

위 원 서종식 (서명)

위 원 이희정 (서명)

위 원 지성우 (서명)